

2013년 선학동 종합감사 결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감 사 실

2013년 선학동 종합감사 결과 보고

I 감 사 목 적

- ❖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예산집행,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민방위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 ❖ 공직기강 해이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시정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II 감 사 개 요

☐ 근 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규칙
- 2013년도 감사·감찰 기본계획

☐ 감사기간 : 2013. 9. 2 ~ 9. 5 (4일간)

☐ 감사범위 : 2011. 9. 1일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중점감사 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 주민센터 운영 및 통·반장 관리 분야
- 복지행정서비스의 법규(지침) 준수 여부 및 지원관리 실태

-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 처리 실태
- 민방위·공사분야 및 민원사무처리 실태

III 감 사 결 과

1. 총 괄

□ 감사처분내역

○ 행정상 조치

- 시 정
- 주 의

총 15건

8 건

7 건

○ 재정상 조치

- 회 수

총 2건

974천 원/30건

□ 감사처분요구 목록

연 번	지 적 사 항	처 분 요 구			비고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신분상 조 치	
	계	15	2		
1	주민자치센터 강사 소득세(지방소득세) 미부과	시정	회수 494,010원/16건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 부적정	주의			
4	지역화합축제 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시정			
5	통·반장 위해축 등 관리소홀	시정	회수 480,185원/14건		
6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시정			
7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주의			
8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업무 처리 소홀	주의			
9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업무 부적정	시정			
10	자동인증기 관리업무 소홀	주의			
11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	시정			
12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등록증 관리 소홀	시정			
13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대상자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4	시설공사 업무처리 소홀	주의			
15	하자검사 업무 소홀	시정			

2. 총 평

- 금번 실시한 종합감사는 2011년 종합감사 이후 2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회계,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의 동행정 전반에 대해 총 15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8, 주의7), 재정상 조치(회수 974천원)를 처분 요구함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선학동 기본현황】

면 적 (km ²)	가구수	인 구(명)	행정조직		공무원수(명)	
			통	반	정원	현원
2.41	8,473	20,753	36	176	12	12

IV 주 요 지 적 사 항

1 센터운영·회계 주민자치센터 강사 소득세(지방소득세) 미부과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1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세액 10/100의 지방소득세분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2011년(9월)과 2012년(1월-6월)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

2 센터운영회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2011년, 2012년 체육의 날 행사를 목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10.11외 2회에 걸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0,000원을 집행하면서 동장 외 11명의 위임 하에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3 센터운영회계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 부적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1항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7조(운영) 제1항에 의하면 “자치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3년도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에 있어 2012년도에 채용된 강사를 공개채용 절차 없이 2013. 12. 31일까지 협약서만으로 채용·확정하였고,
- 운영조례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없이 부적정하게 채용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동장이 아닌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4 센터운영회계

지역화합축제 보조금 정산검사 미 실시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검토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련 규정과 교부조건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제14회 선학가족사랑축제 및 제15회 선학가족사랑축제’ 추진을 위하여 선학동 축제추진위원회에 각각 2011.06.08. 6,500천원, 2012.03.28. 7,500천원을 교부하였고 행사가 각각 2011.10.15, 2012.09.22. 완료되어 1개월 이내에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은 실시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두며, 통·반장은 동장이 위촉한다.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함
- 또한 통장 임기만료 후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前任) 통장이 재임(再任)할 수 있으며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아울러 동장은 기타 통·반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해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럼에도 타시도로 진출되어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반장 8명에 대하여 즉시 해촉하지 아니하고 길게는 2년 6월, 짧게는 3월 후에 해촉하여 그동안 반장보상금(추석, 설 명절휴가비 등 지급) 및 편의제공(쓰레기종량제 일반용 봉투 지급 등) 등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통장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2년에 1회 총 3회까지 재위촉하여야 함에도 1통장 최○○외 3명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재위촉 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

6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등록기준지가 확인되고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개개인에게 고유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표시와 담당·주무가 직접 소인하고,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생년월일·성별로 구분하여 수기 작성·관리하여야 함
- 또한, 번호부여대장 등재누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복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출생신고시 한○○외 7명에 대하여 영구문서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를 받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부여대장’ 작성·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ㄷ 행정상 시정 】

7

주민등록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시·군·구로부터 이송되어 온 습득주민등록증은 습득주민등록증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재발급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하고,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파기하여야 함
-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전결대상) 제4항 별표4에 의하면 주민등록관련 대장은 일일결산 후 동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습득증을 교부하였으나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습득증 및 교부일자 또는 서명날인 등의 대장 미정리, 관외이송 등 처리하였으나 대장미정리 등 총 7건 습득주민등록증 관리·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8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업무처리 소홀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만17세가 되는 달에 해당 월의 신규 17세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에 의하여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영 제29호 서식(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함
- 2013.09.05일 감사일 현재까지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황○○ 외 5명에 대해서 미발급 사유(무단전출 등)를 파악하여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사항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전산입력 하여야 하나 미발급 사유를 알 수 없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주민등록 신고 또는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감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할 수 있으며, 또한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자진 납부시 100분의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홍○○외 7명 대한 주민등록 재등록 및 출생사망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착오로 과다 부과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 연수구수입증지조례 제21조(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및 연수구자동인증기사용업무 처리지침의 수입금 정산(수입금 납부)의 규정에 의하면 계기사용에 따른 증지대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재무회계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수입금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고
-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인으로 소인하되 소인된 면을 원본으로 보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 9. 1 ~ 2013. 8. 31까지 각종 제증명 자동인증기 수입을 관리하면서 총 9회에 걸쳐 짧게는 1일 길게는 12일이 지나 납입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11

사회복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및 201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로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하며,
- 장애인 본인 명의로는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고,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한다. 보행상 장애 유무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름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유형 및 등급이 있는 자에게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였고,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자에게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하○○외 2명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하였고, 반대로 보호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본인용」 표지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12

사회복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등록증 관리 소홀

- 「201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자 중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장애인 복지

카드(또는 장애인 등록증)는 물론,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자인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모두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에 등록하여야 함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등록자 전○○외 10명에 대해서 장애인 본인의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회수 및 폐기처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13

민 방 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대상자 업무처리 부적정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에 의거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총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규정에 의거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 등 동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자들에 대하여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제2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 한편, 민방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재해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년, 2012년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유예·면제자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및 체류 중인 불참자들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서 제출이 없었음에도 임의대로 일괄 면제 조치하는 등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유예·면제자에 대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14	공 사	시설공사 업무처리 소홀
-----------	------------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규정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시행할 때에는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또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 진행 단계별로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수급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그러나,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공사시행을 위한 품의(계획)시 견적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견적서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였고, 또한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서는 착·준공계서류의 미접수, 착공신고시 첨부서류 등 미확인, 준공검사 과정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등 담당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계법규 및 「인천광역시연수구하자검사및보수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3조(정기하자검사)에 따라 공사발주관리부서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년 2회이상 정기하자검사(4월, 10월)를 실시해야 하고, 동 지침 제4조(최종하자검사)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최소한 1개월전에 정기하자검사, 수시검사와는 별도의 최종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 선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2~2013년에 발주 시행하여 완료한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바닥교체 및 누수방지공사 등 6건에 대하여 정기, 수시, 최종정밀 등 하자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하자검사 및 공사완료 후의 사후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ㄷ 행정상 시정 】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Clean-Home』 자원봉사단 운영

- ❖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관내에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독거중증장애인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바,
- ❖ 청소년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수혜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 3월 ~ 12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독거중증장애인
- 봉사인력 : 관내 중·고등학생 중 자원봉사 신청자
- 사업내용
 - 독거노인 및 독거중증장애인가구 청소 및 빨래봉사, 말벗서비스
(여름 장마철 및 겨울 동절기에는 관내 세탁업소 참여 협조요청)
 - 중·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 기회 제공 및 봉사활동시간 인정

□ 추진 계획

- 청소년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 1~2월 중
- 기초생활수급자중 독거노인 및 독거중증장애인 선정 : 1~2월 중
- 수혜자에 대한 사업 실시 : 3월 ~ 12월
- 청소년 및 수혜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연중

□ 기대효과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신체적 정서적 안정 도모
-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 제공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밝고 건전한 인성 함양 및 활동시간 인정